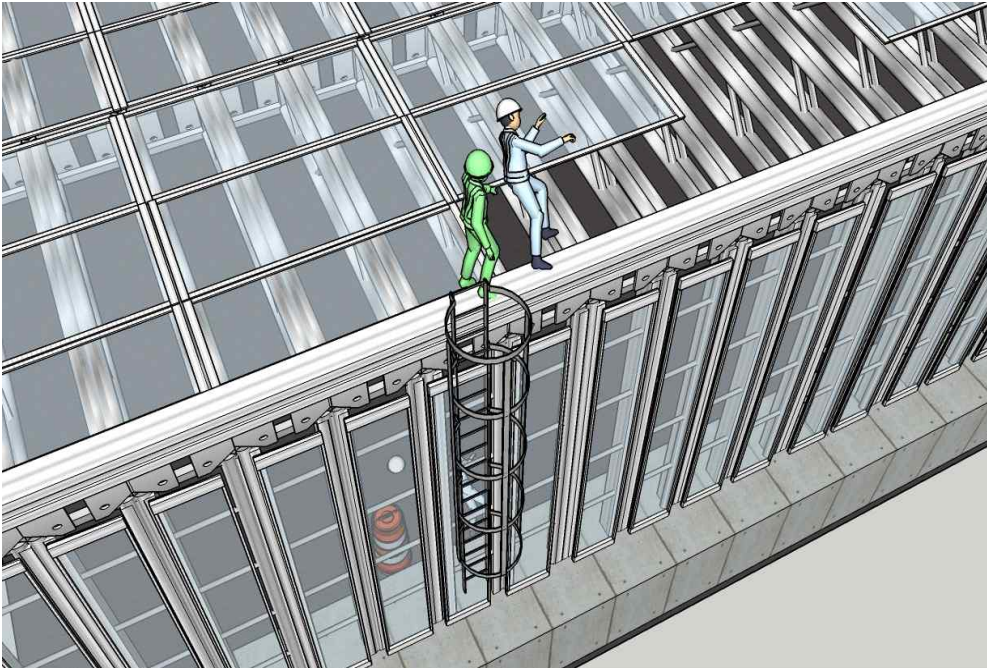




재해 개요

- 2019년 10월 4일(금) 13:10경, 「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」 현장에서 방음터널 지붕 상부의 방음판(t=10mm, 강화유리) 고정용 프레임 틈새의 방수작업을 위해 방음터널 지붕의 끝단부 또는 빗물받이 판을 밟고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(2.6m×1.1m) 아래 약 7.8m 지상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재해 발생 원인

- 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 작업 중 추락방지 조치 미흡
 - 7.8m높이의 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으로 지붕을 강화유리로 덮는 마감공사 중 일부 방음판이 미설치 되어 부득이 개구부가 발생된 상태에서
 -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 및 지붕 하부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방수작업을 위해 이동 중, 방음판이 미설치된 개구부(2.6m×1.1m)사이로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함



재해 예방 대책

- 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 작업 중 추락방지 조치 철저
 - 철골조 방음터널 곡면 지붕작업 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반드시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,
 - 더불어,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